

양돈자조금제도 언제 어떻게 시행되나?

시·군별 양돈자조금 대의원 배정 내역

1. 대의원수 배분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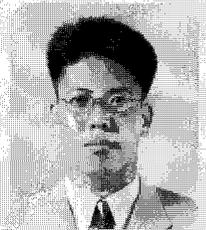
양돈업자는 대의원을 선출하여 수납기관(도축장)을 통하여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할 수 있으며, 자조금 거출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를 선출구역(이하 선출구)으로 하여 양돈업자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양돈의 경우 대의원의 총수는 200명이며, 대의원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농가수와 사육규모(50:50)를 고려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배분 원칙은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공동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에서 마련했다.

배분 원칙은, 선출구를 시·군단위(광역시는 시단위)로 하고, 선출구별 대의원수 배분은 시·도별로 배분한 후, 도별 범위내에서 시·군별로 배분한다.

이렇게 각 시·군별로 농가수와 사육두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대의원수 중 소수점 이하 부분은 반올림하며, 도별로 배분된 대의원수와 도내 시·군별 대의원수 합계가 불일치할 경우 정수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소수점 이하 부분을 조정(올림 또는 버림)하여 대의원수를 배분한다.

또한, 반올림하여 대의원수가 0명으로 배분된 지역의 경우 인근지역(생활권)과 묶어 선출구를 병합하고, 병합된 선출구 역시 위와 같은 원칙에 의해 배분한다. 그리고, 선출구의 명칭은 해당 선출구안의 시·군명을 대의원수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전부 병기하며, 배분된 선출구별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박 순 철 대리
대한양돈협회 지도팀

선출구별 투·개표장소에 대해서는 공동준비위원회에서 "1선출구=1개표소"를 원칙으로 정하고, 투표장소는 양돈협회 지부(회)와 지역축협에

15,640호, 사육두수는 10,141천 두이다. 이는 조사기간('03년 2월~7월)이 긴 관계로 실제와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추후 선거인명부 열람 기

호로 전체 농가수 대비 19.2%로 가장 많았으며, 사육두수는 경기도가 230만두로 전체 사육두수 대비 22.7%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

● 선출구별 대의원수 배분 및 선거인 명부 작성 원칙 ●

첫째, 시·도별 대의원수를 배분하고, 도별 대의원수내에서 시·군별 배분(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되 정수와 불일치부분은 최근접 순서로 조정)

예1 : 경기도 대의원수 39명일 경우 도내 시·군별 대의원수는 39명에서 재배분

예2 : 천안의 경우 대의원수가 258명이므로 반올림하여 3명이 되어야 하나, 충청남도에 배분된 대의원수가 39명이고, 도내 타 선출구 대의원수 합계가 37명이므로 천안은 소수점 이하를 버려 2명으로 배분

둘째, 병합된 선출구는 인근지역(생활권)으로 통합

예 : 의정부(0.03명), 동두천(0.3명)으로 대의원수 0명이므로 인근지역 양주(3명)에 병합

셋째, 선출구의 명칭은 해당 선출구 시·군명을 "대의원수 비율"이 높은 순서로 전부 병기

예 : 양주(3.16명), 동두천(0.3명), 의정부(0.03명) ⇒ 양주·동두천·의정부선출구

넷째, 배분된 선출구별로 선거인명부 작성

예 : 양주·동두천·의정부선출구 ⇒ 양주·동두천·의정부 선출구 선거인명부

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단, 일정기간내에 자율적으로 합의가 안되는 지역은 실무단에서 중재를 하고, 중재가 안될시에는 공동위원장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2. 시·도별 대의원수 배분 현황

농림부에서 발표한 전국 가축사육두수 조사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전체 농가수는

간을 별도로 가져 오기된 부분을 보완할 것이며,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선거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표 1〉을 보면, 우리나라 167개 시·군(광역시 포함)중 164개 시·군에 양돈농가가 양돈업을 하고 있어 전체 시·군수의 98%나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농가가 없는 시·군은 경기도 구리시와 군포시, 전라남도 목포시였다.

농가수는 충청남도가 3,003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가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은 충청남도 당진군으로 830호이며, 다음은 충청남도 홍성군(641호), 전라북도 남원시(564호) 순이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육두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은 충청남도 홍성군으로 사육두수 456천두이며, 다음은 경기도 이천시(348천두), 경기도 용인시(282천두) 순이었다.

반대로 가장 적은 농가수

〈표 1〉 시·도별 대의원수 배분 현황(전체 농가 선거권 부여시)

구 분	시·군수(개)		사육두수 조사결과(전수)				대의원수(명)	
	농 가	전 체	농가수(호)	백분율	사육두수(두)	백분율	산출결과	배분(안)
전 국	164	167	15,640	100%	10,140,939	100%	200	200
경 기	29	31	2,495	16.0%	2,303,187	22.7%	38.66	39
서 울	1	1	16	0.1%	2,380	0.0%	0.13	
인 천	1	1	209	1.3%	93,206	0.92%	2.26	2
강 원	18	18	695	4.4%	471,669	4.65%	9.09	9
충 북	12	12	623	4.0%	496,414	4.90%	8.88	9
충 남	16	16	3,003	19.2%	1,956,437	19.3%	38.49	39
대 전	1	1	21	0.1%	5,004	0.0%	0.18	
전 북	14	14	2,082	13.3%	996,665	9.8%	23.14	23
전 남	21	22	2,270	14.5%	888,137	8.8%	23.27	24
광 주	1	1	32	0.2%	10,051	0.1%	0.30	
경 북	23	23	1,554	9.9%	1,248,170	12.3%	22.24	22
대 구	1	1	140	0.9%	36,749	0.4%	1.26	1
경 남	20	20	2,026	13.0%	1,141,038	11.3%	24.21	24
부 산	1	1	55	0.4%	19,638	0.2%	0.55	1
울 산	1	1	66	0.4%	47,896	0.5%	0.89	1
제 주	4	4	353	2.3%	424,298	4.2%	6.44	6

*대의원수 배분 산출식 : (선출구별 축산업자수 ÷ 전체 축산업자수 × 대의원의 총수 × 0.5) + (선출구별 가축사육마리수 ÷ 전체 가축사육마리수 × 대의원의 총수 × 0.5)

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1개 농가가 34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

참고로 가구당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시·군은 강원도 평창군(3,939두/호)이었으며, 가장 적은 시·군은 경기도 성남시(9두/호) 이었다.

3. 선거권자 및 대의원 후보자 자격

제2차 공동준비위원회에서 선거권자의 범위에 대해 가장 논란이 많았으며, 심도있는

논의 끝에 3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아닌 전 농가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선출구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양돈업자이면 누구나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선출구별 선거관리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장 및 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출구별 선거권자가 기재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되었거나 오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 및 수정기간을 가져 보완할

것이나, 선거인 명부에 누락된 농가의 경우 공동준비위원회에 증빙서류(해당 시·군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선거권은 부여하되, 사육두수는 수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사육두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 선출구의 경우 해당 시·군청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사육두수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에 공동추진 실무단에서는 '대의원 선거규정'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 검토중이 있다. **양돈**